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
번 호

20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제안이유

-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이율을 현재 이자율 하향추세와 공동체 및 사업단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대여자금의 이자 하향조정 : 연 5% ⇒ 연 3%
-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 조정 : 5% ⇒ 3%

의안전문 : 따로 볼임

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볼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볼임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법위내”를 “법위안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현 5%”를 “현 3%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5%의 법위내”를 “3%의 법위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 ②(생략)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%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%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④(생략) 제9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%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	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----- ----- 범위안 ----- 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연 3% -----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 제9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3%의 범위안 ----- ----- ②~③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령 발췌

국민기초생활보장법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<p>제44조(보장기금의 적립) ①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지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제41조(보장기금의 설치)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</p>